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0호**서울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8호(2021.06.30.)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6호(2021.11.03.)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지구 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1) 명 칭 : 서울향동 공공주택지구
-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일원
- 3) 면 적

- 지정: 662,464.9㎡

(1공구 : 363,324.2㎡, 2공구 : 184,844.2㎡, 3공구 : 66,365.8㎡, 4공구 : 2,623.8㎡
5공구 : 45,306.9㎡)

- 변경: 662,438.3㎡ (감 26.6㎡)

(1공구 : 366,869.2㎡, 2공구 : 184,844.2㎡, 3공구 : 62,794.2㎡, 4공구 : 2,623.8㎡
5공구: 45,306.9㎡)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3) 대표자 성명

- 지정 :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 변경 : 사장 김 헌 동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1) 명 칭 : 서울향동 공공주택지구
-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일원
- 3) 면 적

- 지정: 662,464.9㎡

(1공구 : 363,324.2㎡, 2공구 : 184,844.2㎡, 3공구 : 66,365.8㎡, 4공구 : 2,623.8㎡
5공구 : 45,306.9㎡)

- 변경: 662,438.3㎡ (감 26.6㎡)

(1공구 : 366,869.2㎡, 2공구 : 184,844.2㎡, 3공구 : 62,794.2㎡, 4공구 : 2,623.8㎡
5공구: 45,306.9㎡)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지정 :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 변경 : 사장 김 현 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5,132호(공동주택:4,232호, 단독주택:29호, 도시형생활주택:871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38,337.3	5,132	12,222	
단 독 주 택	8,045.4	29	73	
공 동 주 택	206,980.5	4,232	10,581	
60㎡ 이하	83,550.7	1,964	4,910	
60㎡~85㎡	107,098.3	1,986	4,965	
85㎡ 초과	16,331.5	282	706	
도시형생활주택	23,311.4	871	1,568	행복주택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 [30개 노선 : 5,622m]

· 일반도로 [24개 노선 : 5,494m]

· 보행자전용도로 [6개 노선 : 128m]

○ 주차장 계획 [3개소, 4,013.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662	-	-	-	-	598	64	-	-	-	-	-	-	-	-	
조성공사	662	-	-	-	-	-	33	199	199	132	79	15	3	2	-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6,153	-	-	-	-	4,622	565	305	305	203	121	22	6	4	-	
용지보상	5,136	-	-	-	-	4,622	514	-	-	-	-	-	-	-	-	
조성공사	1,017	-	-	-	-	-	51	305	305	203	121	22	6	4	-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06월 30일
 2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3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4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5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3년 09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변경)

-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전체	구분별	
총계		662,464.9	363,324.2	184,844.2	66,365.8	2,623.8	45,306.9	100.0		
공공 주택 용지	계	581,964.9	363,324.2	107,750.0	65,583.8	-	45,306.9	87.8	100.0	
	소계	251,054.8	220,833.9	-	-	-	30,220.9	37.8	43.2	· 5,132세대
	단독주택용지	8,045.4	8,045.4	-	-	-	-	1.2	1.4	· 29세대
	공동주택 건설용지	도시형 생활주택	23,311.4	7,013.7	-	-	16,297.7	3.5	4.0	· 871세대(행복주택)
	아파트	206,980.5	193,057.3	-	-	-	13,923.2	31.2	35.6	· 4,232세대
	근생시설용지	12,717.5	12,717.5	-	-	-	-	1.9	2.2	
	소계	330,910.1	142,490.3	107,750.0	65,583.8	-	15,086.0	50.0	56.8	
	업무시설용지	27,956.3	27,956.3	-	-	-	-	4.2	4.8	
	소계	6,172.9	5,512.5	-	-	-	660.4	1.0	1.1	
	도시지원 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및 사회복지시설	3,865.5	3,205.1	-	-	660.4	0.6	0.7	· 4개소
	커뮤니티센터	2,307.4	2,307.4	-	-	-	-	0.4	0.4	· 1개소
	소계	145,759.6	44,933.4	52,261.0	34,139.6	-	14,425.6	22.0	25.1	
	근린공원	66,702.5	26,643.9	25,633.0	-	-	14,425.6	10.1	11.5	· 4개소
	체육공원	12,813.0	-	-	12,813.0	-	-	1.9	2.2	· 1개소 · 중북면적(유수지2,512㎡포함)
	완충녹지	11,845.2	1,246.2	738.0	9,861.0	-	-	1.8	2.1	· 5개소
	경관녹지	15,127.1	5,049.5	1,353.0	8,724.6	-	-	2.3	2.6	· 8개소
	연결녹지	8,774.4	7,974.4	-	800.0	-	-	1.3	1.5	· 4개소
	공공공지	11,032.4	4,019.4	5,072.0	1,941.0	-	-	1.7	1.9	· 12개소 · 중북면적(수도공급시설1,054㎡, 하수도964㎡포함)
	하천	18,090.0	-	18,090.0	-	-	-	2.7	3.1	· 역곡천 · 중북면적(수도공급시설2㎡, 하수도1,835㎡포함)
	광장	1,375.0	-	1,375.0	-	-	-	0.2	0.2	· 1개소
	소계	22,146.7	22,146.7	-	-	-	-	3.3	3.8	
	초등학교	9,994.3	9,994.3	-	-	-	-	1.5	1.7	· 1개소
	중학교	10,552.1	10,552.1	-	-	-	-	1.6	1.8	· 1개소
	유치원	1,600.3	1,600.3	-	-	-	-	0.2	0.3	· 1개소
	소계	119,919.0	38,163.8	51,855.0	29,900.2	-	-	18.1	20.5	
	도로	일반도로	118,954.6	37,319.4	51,855.0	29,780.2	-	18.0	20.4	· 가각포함 · 중북면적(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1㎡,하천2,156㎡)
	보행자전용도로	964.4	844.4	-	120.0	-	-	0.1	0.1	· 중북면적(도로100㎡포함)
	주유소	1,308.3	1,308.3	-	-	-	-	0.2	0.2	· 1개소
	주차장	4,013.3	2,469.3	-	1,544.0	-	-	0.6	0.7	· 3개소
	철도	3,634.0	-	3,634.0	-	-	-	0.6	0.6	· 중북면적(하천74㎡,도로482㎡,하수도7㎡포함)
훼손 지 복구 용지	계	80,500.0	-	77,094.2	782.0	2,623.8	-	12.2	100.0	
	소계	70,570.0	-	68,006.2	-	2,563.8	-	10.7	87.7	
	근린공원	67,055.0	-	64,491.2	-	2,563.8	-	10.1	83.3	· 1개소 · 중북면적(폐기물처리시설3,447㎡, 유수지6,911㎡,도로124㎡, 광명서울고속도로50㎡포함)
	공공공지	1,112.0	-	1,112.0	-	-	-	0.2	1.4	· 3개소 · 중북면적(수도공급시설798㎡, 하수도21㎡포함)
	하천	2,403.0	-	2,403.0	-	-	-	0.4	3.0	· 역곡천 · 중북면적(하수도210㎡포함)
	도로	4,440.0	-	3,598.0	782	60.0	-	0.7	5.5	· 중북면적(하수도5㎡포함)
	철도	5,490.0	-	5,490.0	-	-	-	0.8	6.8	· 중북면적(수도공급시설28㎡,하천36㎡, 하수도4㎡,도로144㎡포함)

※ 녹지율은 공원, 녹지, 하천, 광장, 보행자도로(폭10m이상:311㎡) 포함(훼손지 복구용지 제외)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전체		구분별		
총계		662,438.3	366,869.2	184,844.2	62,794.2	2,623.8	45,306.9	100.0				
공공 주택 용지	계		581,938.3	366,869.2	107,750.0	62,012.2	-	45,306.9	87.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51,054.8	220,833.9	-	-	-	30,220.9	37.8	43.2	• 5,132세대
		단독주택용지		8,045.4	8,045.4	-	-	-	-	1.2	1.4	• 29세대
		공동주택 건설용지	도시형 생활주택	23,311.4	7,013.7	-	-	-	16,297.7	3.5	4.0	• 871세대(행복주택)
			아파트	206,980.5	193,057.3	-	-	-	13,923.2	31.2	35.6	• 4,232세대
		근생시설용지		12,717.5	12,717.5	-	-	-	-	1.9	2.2	
	공원 녹지	소계		330,883.5	146,035.3	107,750.0	62,012.2	-	15,086.0	50.0	56.8	
		업무시설용지		27,956.3	27,956.3	-	-	-	-	4.2	4.8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계	6,172.9	5,512.5	-	-	-	660.4	1.0	1.1	
			주거편익시설및 사회복지시설	3,865.5	3,205.1	-	-	-	660.4	0.6	0.7	• 4개소
			커뮤니티센터	2,307.4	2,307.4	-	-	-	-	0.4	0.4	• 1개소
		공원녹지	소계	145,728.4	48,473.8	52,261.0	30,568.0	-	14,425.6	22.0	25.1	
			근린공원	66,692.5	26,633.9	25,633.0	-	-	14,425.6	10.1	11.5	• 4개소
			체육공원	12,813.0	-	-	12,813.0	-	-	1.9	2.2	• 1개소 • 중복면적(유수지2,512㎡포함)
			완충녹지	11,840.6	1,246.2	738.0	9,856.4	-	-	1.8	2.1	• 5개소
			경관녹지	15,110.8	8,600.2	1,353.0	5,157.6	-	-	2.3	2.6	• 8개소
			연결녹지	8,775.1	7,975.1	-	800.0	-	-	1.3	1.5	• 4개소
			공공공지	11,031.4	4,018.4	5,072.0	1,941.0	-	-	1.7	1.9	• 12개소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1,054㎡, 하수도954㎡포함)
			하천	18,090.0	-	18,090.0	-	-	-	2.7	3.1	• 역곡천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 하수도1,835㎡포함)
			광장	1,375.0	-	1,375.0	-	-	-	0.2	0.2	• 1개소
		교육시설	소계	22,146.7	22,146.7	-	-	-	-	3.3	3.8	
			초등학교	9,994.3	9,994.3	-	-	-	-	1.5	1.7	• 1개소
			중학교	10,552.1	10,552.1	-	-	-	-	1.6	1.8	• 1개소
			유치원	1,600.3	1,600.3	-	-	-	-	0.2	0.3	• 1개소
		도로	소계	119,923.6	38,168.4	51,855.0	29,900.2	-	-	18.1	20.5	
			일반도로	118,959.2	37,324.0	51,855.0	29,780.2	-	-	18.0	20.4	• 가각포함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1㎡,하천2,156㎡)
			보행자전용도로	964.4	844.4	-	120.0	-	-	0.1	0.1	• 중복면적(도로100㎡포함)
			주유소	1,308.3	1,308.3	-	-	-	-	0.2	0.2	• 1개소
		주차장	4,013.3	2,469.3	-	1,544.0	-	-	-	0.6	0.7	• 3개소
		철도	3,634.0	-	3,634.0	-	-	-	-	0.6	0.6	• 중복면적(하천74㎡,도로482㎡,하수도7㎡포함)
훼손 지 복구 용지	계		80,500.0	-	77,094.2	782.0	2,623.8	-	12.2	100.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0,570.0	-	68,006.2	-	2,563.8	-	10.7	87.7		
		공원 녹지	근린공원	67,055.0	-	64,491.2	-	2,563.8	-	10.1	83.3	• 1개소 • 중복면적(폐기물처리시설3,447㎡ 유수지6,911㎡,도로124㎡, 광명서울고속도로50㎡포함)
			공공공지	1,112.0	-	1,112.0	-	-	-	0.2	1.4	• 3개소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798㎡, 하수도21㎡포함)
			하천	2,403.0	-	2,403.0	-	-	-	0.4	3.0	• 역곡천 • 중복면적(하수도210㎡포함)
			도로	4,440.0	-	3,598.0	782.0	60.0	-	0.7	5.5	• 중복면적(하수도5㎡포함)
		철도	5,490.0	-	5,490.0	-	-	-	0.8	6.8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8㎡,하천36㎡, 하수도4㎡,도로144㎡포함)	

※ 녹지율은 공원, 녹지, 하천, 광장, 보행자도로(폭10m이상:311㎡) 포함(훼손지 복구용지 제외)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계획

블록		구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공구	비고
총계			230,291.9		5,103	100.0	12,149			
공동주택(아파트)			206,980.5		4,232	82.9	10,581			
	1BL	소계	24,883.9		419	8.2	1048	220	1공구	
		60~85㎡	(8,373.8)	74	141	2.8	353			일반분양
		60~85㎡	(12,471.7)	84	210	4.1	525			일반분양
		85㎡초과	(4,038.4)	101	68	1.3	170			일반분양
	2BL	소계	28,087.3		646	12.7	1,615	220	1공구	
		60㎡이하	(10,956.6)	59	252	4.9	630			국민임대
		60㎡이하	(8,478.4)	59	195	3.8	488			공공분양
		60~85㎡	(5,739.2)	74	132	2.6	329			공공분양
		60~85㎡	(2,913.1)	84	67	1.3	168			공공분양
	3BL	소계	50,056.4		1,170	22.9	2,924	220	1공구	
		60㎡이하	(3,208.7)	39	75	1.5	187			국민임대
		60㎡이하	(3,208.7)	49	75	1.5	187			국민임대
		60㎡이하	(12,321.6)	59	288	5.6	720			국민임대
		60㎡이하	(17,027.8)	59	398	7.8	995			공공분양
		60~85㎡	(9,241.2)	74	216	4.2	540			공공분양
		60~85㎡	(5,048.4)	84	118	2.3	295			공공분양
	4BL	소계	13,923.2		297	5.8	743	200	5공구	
		60㎡이하	(1,687.7)	49	36	0.7	90			국민임대
		60㎡이하	(3,328.4)	59	71	1.4	178			국민임대
		60㎡이하	(8,907.1)	59	190	3.7	475			공공분양
	5BL	소계	39,948.1		634	12.4	1,585	180	1공구	
		60~85㎡	(13,421.0)	74	213	4.2	533			일반분양
		60~85㎡	(20,037.1)	84	318	6.2	794			일반분양
		85㎡초과	(6,490.0)	101	103	2.0	258			일반분양
	6BL	소계	17,431.5		337	6.6	843	220	1공구	
		60~85㎡	(5,845.0)	74	113	2.2	282			일반분양
		60~85㎡	(8,741.6)	84	169	3.3	423			일반분양
		85㎡초과	(2,844.9)	101	55	1.1	138			일반분양
	7BL	소계	18,224.4		345	6.8	863	220	1공구	
		60~85㎡	(6,127.6)	74	116	2.3	290			일반분양
		60~85㎡	(9,138.6)	84	173	3.4	433			일반분양
		85㎡초과	(2,958.2)	101	56	1.1	140			일반분양
	8BL	소계	14,425.7		384	7.5	960	200	1공구	
		60㎡이하	(6,499.1)	39	173	3.4	432			국민임대
		60㎡이하	(4,921.3)	49	131	2.6	328			국민임대
		60㎡이하	(3,005.3)	59	80	1.6	200			국민임대
도시형생활주택			23,311.4		871	17.1	1,568			
도시 형 생 활 주 택	1	소계	8,150.4		298	5.8	536	210	5공구	
		60㎡이하	(5,442.7)	29	199	3.9	358			행복주택
		60㎡이하	(2,707.7)	39	99	1.9	178			행복주택
	2	소계	8,147.3		297	5.8	535	210	5공구	
		60㎡이하	(5,349.2)	29	195	3.8	352			행복주택
		60㎡이하	(2,798.1)	39	102	2.0	183			행복주택
	3	소계	7,013.7		276	5.4	497	210	1공구	
		60㎡이하	(4,625.0)	29	182	3.6	328			행복주택
		60㎡이하	(2,388.7)	39	94	1.8	169			행복주택

-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대지지분(괄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름
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8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원룸형 30%이상 확보는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산정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공 구	비 고
일반단독	8,045.4	29	73	1공구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6개소	12,717.5	-	
근린 생활 시설	1	구로구 향동 79전 일원	2,100.8	1공구	
	2	구로구 향동 125-1전 일원	3,129.1	1공구	
	3	구로구 향동 199-6답 일원	3,298.1	1공구	
	4	구로구 향동 179-1전 일원	1,673.9	1공구	
	5	구로구 향동 13-1대 일원	591.7	1공구	
	6	구로구 향동 190전 일원	1,923.9	1공구	

3)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공 구	비 고
계	-	3개소	27,956.3	-	
업무시설	1	구로구 향동 산52-1묘 일원	7,402.2	1공구	
	2	구로구 향동 산50-1임 일원	8,320.3	1공구	
	3	구로구 향동 206-1전 일원	12,233.8	1공구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기 정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 계			-	30	5,622	124,359.0	38,163.8	55,453.0	30,682.2	60.0	-	
일반도로	소 계		-	24	5,494	123,394.6	37,319.4	55,453.0	30,562.2	60.0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포함 ·훼손지 복구 ·용지내 포함 ·철도 중복결정 (626m²) ·근린공원 중복결정 (124m²) ·보행자도로 중복결정 (100m²)
	대로	소계	-	3	1,907	66,362.2	6,980.2	49,077.0	10,245.0	60.0	-	
		1	37~40	1	286	10,245.0	-	-	10,245.0	-	-	
		2	31~37	1	1,382	49,137.0	-	49,077.0	-	60.0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5	26,085.6	6,376.0	17,122.9	-	-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2	15~18	4	840	13,740.6	13,740.6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소계	-	11	894	7,447.9	4,253.6	-	3,194.3	-	-	
		1	11.3~11.5	2	61	724.3	347.3	-	377.0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3	6	5	180	1,113.9	708.9	-	405.0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 계		-	6	128	964.4	844.4	-	120.0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포함 ·일반도로 중복결정 (100m²)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소로	2	8	1	20	160.0	160.0	-	-	-	-	
		3	6	4	82	492.8	372.8	-	120.0	-	-	

-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 계			-	30	5,622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포함 ·훼손지 복구 ·용지내 포함 ·철도 중복결정 (626m²) ·근린공원 중복결정 (124m²) ·보행자도로 중복결정 (100m²)
일반 도로	소 계		-	24	5,494	123,399.2	37,324.0	55,453.0	30,562.2	60.0	-	
	대로	소계	-	3	1,907	66,362.2	6,980.2	49,077.0	10,245.0	60.0	-	
		1	37~40	1	286	10,245.0	-	-	10,245.0	-	-	
		2	31~37	1	1,382	49,137.0	-	49,077.0	-	60.0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4	26,085.5	6,376.0	17,122.9	-	-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2	15~18	4	840	13,740.5	13,740.5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소계	-	11	894	7,452.6	4,258.3	-	3,194.3	-	-	
		1	11.3~11.5	2	61	729.0	352.0	-	377.0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3		6	5	180	1,113.9	708.9	-	405.0	-	-		
보행자 차 용 도 로	소 계		-	6	128	964.4	844.4	-	120.0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포함 ·일반도로 중복결정 (100m²)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소로	2	8	1	20	160.0	160.0	-	-	-	-	
		3	6	4	82	492.8	372.8	-	120.0	-	-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3개소	4,013.3	-
주차장	1	구로구 향동 182답 일원	1,544.0	3공구	
	2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795.4	1공구	
	3	구로구 향동 83전 일원	1,673.9	1공구	

○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기정	변경		
계	-	5개소	254,838.5 (146,570.5)	254,828.5 (146,560.5)	-	·지구밖 푸른수목원 108,268㎡포함
근린공원	푸른 수목원	구로구 향동 31공원 일원	200,956.0 (92,688.0)	200,956.0 (92,688.0)	2공 구, 4공 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중복결정 (124㎡) ·광명 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국토부 고시 제2020-347호) ·2공구 : 90,124.2㎡ ·4공구 : 2,563.8㎡
	2	구로구 향동 76-1전 일원	14,425.6	14,425.6	5공 구	
	3	구로구 향동 산50-2임 일원	12,559.4	12,549.5	1공 구	
	4	구로구 향동 산50-3임 일원	14,084.5	14,084.4	1공 구	
체육공원	1	구로구 향동 162전 일원	12,813.0	12,813.0	3공 구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는 지구내 공원면적

○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17개소	35,746.7	35,726.5	-	-	
완충녹지	소계	5개소	11,845.2	11,840.6	-	-	
	1	구로구 향동 산50-9철 일원	1,246.2	1,246.2	1공구	1공구	
	2	구로구 향동 산50-5임 일원	2,768.0	2,768.0	3공구	3공구	
	3	구로구 향동 216-11답 일원	3,025.0	3,025.0	3공구	3공구	
	4	구로구 향동 216-2답 일원	738.0	738.0	2공구	2공구	
	5	구로구 향동 211-23답 일원	4,068.0	4,063.4	3공구	3공구	
경관녹지	소계	8개소	15,127.1	15,110.8	-	-	
	1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1,046.0	1,046.0	3공구	3공구	
	2	구로구 향동 100-6답 일원	1,353.0	1,353.0	2공구	2공구	
	3	구로구 향동 190전 일원	1,157.0	1,157.0	3공구	3공구	
	4	구로구 향동 산44-1임 일원	3,915.5	3,915.5	1공구	1공구	
	5	구로구 향동 산48-1임 일원	2,954.6	2,954.6	3공구	3공구	
	6	구로구 향동 산50-1임 일원	3,567.0	3,549.7	3공구	1공구	
	7	구로구 향동 193-2답 일원	700.4	701.4	1공구	1공구	
	8	구로구 향동 145-7대 일원	433.6	433.6	1공구	1공구	
연결녹지	소계	4개소	8,774.4	8,775.1	-	-	
	1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5,641.2	5,641.2	1공구	1공구	
	2	구로구 향동 158-1전 일원	1,196.6	1,196.6	1공구	1공구	
	3	구로구 향동 산50-1임 일원	1,136.6	1,137.3	1공구	1공구	
	4	구로구 향동 216-13답 일원	800.0	800.0	3공구	3공구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1,375	-	
경관광장	1	구로구 향동 214-3전 일원	1,375	2공구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기정	변경		
계	-	15개소	12,144.4	12,143.4	-	
공공공지	1	구로구 향동 31-1도 일원	1,333.4	1,333.4	1공구	
	2	구로구 향동 118-2대 일원	2,355.0	2,355.0	2공구	
	3	구로구 향동 110-2철 일원	1,497.0	1,497.0	2공구	
	4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539.0	539.0	3공구	
	5	구로구 향동 100-6답 일원	1,220	1,220	2공구	
	6	구로구 향동 111-3답 일원	314.0	314.0	2공구	· 훼손지 복구 용지내
	7	구로구 향동 200-1답 일원	471.0	471.0	2공구	· 훼손지 복구 용지내
	8	구로구 향동 199-4수 일원	327.0	327.0	2공구	· 훼손지 복구 용지내
	9	구로구 향동 183-1답 일원	1,112.1	1,112.1	1공구	
	10	구로구 향동 190전 일원	481.0	481.0	3공구	
	11	구로구 향동 162전 일원	921.0	921.0	3공구	
	12	구로구 향동 193-2답 일원	602.5	602.5	1공구	
	13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430.2	430.2	1공구	
	14	구로구 향동 215답 일원	496.0	495.0	1공구	
	15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45.2	45.2	1공구	

○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22,859	-	
하천	1	구로구 향동222-41구 일원	22,859	2공구	도로 및 철도시설과 중복결정(2,366m ²) 포함 면적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하수도 중복결정

○ 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3개소	9,423	-	용량 : 약19,030m ³
저류시설	1	구로구 향동 111-3답 일원	2,836	2공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m ²)
	2	구로구 향동 164전 일원	2,512	3공구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m ²)
	3	구로구 향동 198-2답 일원	4,075	2공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m ²)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3개소	22,146.7	-	
유치원	1	구로구 향동 159전 일원	1,600.3	1공구	
초등학교	2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9,994.3	1공구	
중학교	3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10,552.1	1공구	

○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2,307.4	-	
복합커뮤니티시설	1	구로구 향동 176-2전 일원	2,307.4	1공구	

○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4개소	3,865.5	-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	구로구 향동 190전 일원	1,149.8	1공구	주용도 : 종교
	2	구로구 향동 산36임 일원	660.4	5공구	주용도 : 종교
	3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960.2	1공구	주용도 : 종교
	4	구로구 향동 183-6답 일원	1,095.1	1공구	주용도 : 사회복지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1,308.3	-	
주유소	1	구로구 향동 산53임 일원	1,308.3	1공구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2,107	-	
수도공급시설	1	구로구 향동 215답 일원	2,107	1공구	

○ 하수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2개소	3,288	-	
하수도	1	구로구 향동 222-13 일원	2,941	2공구	
	2	구로구 향동 222-57 일원	347	2공구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13,447	-	
폐기물처리시설	1	구로구 향동 58-1답 일원	13,447	2공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13,447m ²)

○ 철도(군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9,124	-	
철도(군사시설)	1	구로구 향동 110-2철 알원	9,124	2공구	·도로 중복결정 (626m ² 포함)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방법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총 계		292,105.9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소 계	251,054.8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8,045.4	29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협약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가격 비주거부분:낙찰가격		
	도시형생활주택 용지	23,311.4	3	행복 주택	-	조성원가 60%	승인후	
	공동주택 건설용지	206,980.5	8	국민 임대 공공 임대	-	조성원가 60%	승인후	
				공공 분양	-	감정가격		
				공공 분양	-	감정가격		
				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용지	12,717.5	6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시설 용지	소 계		41,051.1						
	업무시설용지		27,956.3	3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커뮤니티 센터	2,307.4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유치원		1,600.3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협의양도자 (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준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즈기편이 시설및 사회복지 시설	주용도: 사회복지 시설	1,095.1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 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 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용도: 종교시설	2,770.4	3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준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유소		1,308.3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주차장		4,013.3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k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서울항동	서울특별시 일원	152.425※	-	152.425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96호(2021.11.03)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사항임

2)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하.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주택지구 밖의 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없음)**가. 사업계획(변경없음)**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도로)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 현 동

다. 지구밖 사업의 개요(변경없음)**1) 개발목적**

-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구외 도로에 대해 주택지구밖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구내·외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고자 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1 : 부천시 소사동로와 항동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사업2 : 항동지구 8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3 : 부천시 소사동로 버스베이 이설공사

라.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1) 지구밖 사업1 : 부천시 소사동로와 항동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5-11도 일원
- 면 적 : 2,259.1㎡ (B=20.5m, L=80m, 가감속포함)

2) 지구밖 사업2 : 항동지구 8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산69-4임 일원
- 면 적 : 1,457.5㎡ (B=11.5m, L=51m, 가감속포함)

3) 지구밖 사업3 : 부천시 소사동로 버스베이 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0-3도 일원
- 면 적 : 796㎡(버스베이이설)/15,725.2㎡(노선도색)(B=30m, L=407m, 가감속포함)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2년 06월 30일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자.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주택지구 밖의 사업(하수도) 실시계획(변경없음)**가. 사업계획(변경없음)**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하수도)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 현 동

다. 지구밖 사업의 개요(변경없음)**1) 개발목적**

-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된 하수도에 대해 주택지구밖의 하수차집관로를 설치함으로써 지구내·외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고자 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라.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1) 지구밖 사업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668-44천 일원
- 면 적 : 1,535㎡
- 연 장 : 619m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년 03월 31일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서울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k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	감) 0.0000266	605.958	100.0	
주거 지역	소 계	309.653	감) 0.0000010	309.653	51.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6	-	5.446	0.90	
	제2종 전용주거지역	0.844	-	0.844	0.14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617	-	64.617	10.6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10	감) 0.0000001	132.910	21.94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72	감) 0.0000009	94.172	15.54	
	준주거지역	11.664	-	11.664	1.92	
상업 지역	소 계	25.992	-	25.992	4.29	
	중심상업지역	0.360	-	0.360	0.06	
	근린상업지역	0.807	-	0.807	0.13	
	유통상업지역	1.558	-	1.558	0.26	
	일반상업지역	23.267	-	23.267	3.84	
공업 지역	소 계	27.645	-	27.645	4.56	
	준공업지역	27.645	-	27.645	4.56	
녹지 지역	소 계	242.668	감) 0.0000256	242.668	40.05	
	보전녹지지역	0.072	-	0.072	0.01	
	생산녹지지역	0.657	-	0.657	0.11	
	자연녹지지역	241.939	감) 0.0000256	241.939	39.93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96호(2021.11.03)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임

나.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62,464.9	감) 26.6	662,438.3	100.0	
주거 지역	소 계	427,559.5	감) 1.0	427,558.5	6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77.8	-	14,377.8	2.2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20.3	감)0.1	29,120.2	4.3	
	제3종일반주거지역	307,130.9	감)0.9	307,130.0	46.4	
	준주거지역	76,930.5	-	76,930.5	11.6	
녹지 지역	소 계	234,905.4	감)25.6	234,879.8	35.5	
	자연녹지지역	234,905.4	감)25.6	234,879.8	35.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20.2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07,130.0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4,879.8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3.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내용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k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서울항동	서울특별시 일원	152.425※	-	152.425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96호(2021.11.03)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사항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 게재생략

라. 개발제한구역 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 기정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 (m)	면 적 (m ²)						노선 수	연 (m)	면 적 (m ²)						노선 수	연 (m)	면 적 (m ²)						노선 수	연 (m)	면 적 (m ²)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 계	30	5,622	124,390	38,163	55,430	30,622	60.0	-	6	1,725	40,427	6,321.8	6,376.0	27,744.9	-	-	10	2,895	66,673	17,080	49,070	2,412.3	60.0	-	14	1,002	15,230	14,744.0	-	525.0	-	-
일반 도로	계	24	5,494	123,396	37,319	55,430	30,522	60.0	6	1,725	40,427	6,321.8	6,376.0	27,744.9	-	-	9	2,875	66,453	16,980	49,070	2,412.3	60.0	-	9	894	14,466	14,036	-	405.0	-	-
	대로	3	1,907	66,322	6,980.2	49,070	10,245.0	60.0	1	286	10,245.0	-	-	10,245.0	-	-	1	1,382	49,130	-	49,070	-	60.0	-	1	239	6,980.2	6,980.2	-	-	-	-
	중로	10	2,693	49,584.5	26,056	6,376.0	17,122.9	-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4	840	13,740.6	13,740.6	-	-	-	-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11	894	7,479	4,236	-	3,194.3	-	2	61	724.3	347.3	-	377.0	-	-	4	653	5,601.7	3,197.4	-	2,412.3	-	-	5	180	1,139	708.9	-	405.0	-	-
특수 도로	계	6	128	964.4	844.4	-	120.0	-	-	-	-	-	-	-	-	-	1	20	160.0	160.0	-	-	-	-	5	108	804.4	684.4	-	120.0	-	-
	중로	1	26	311.6	311.6	-	-	-	-	-	-	-	-	-	-	-	-	-	-	-	-	-	-	-	1	26	311.6	311.6	-	-	-	-
	소로	5	102	652.8	532.8	-	120.0	-	-	-	-	-	-	-	-	-	1	20	160.0	160.0	-	-	-	-	4	82	492.8	372.8	-	120.0	-	-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체 등 포함

- 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 계	30	5,622	124,363	638,168	455,453	30,682	2	6	1,725	40,447	6,336	6,376	27,749	-	-	-	10	2,805	68,672	17,087	40,070	2,412	600	-	14	1,002	15,280	14,740	-	525	-	-
일반 도로	계	24	5,494	123,392	637,320	455,453	30,562	6	1,725	40,447	6,336	6,376	27,749	-	-	-	9	2,875	68,482	16,939	40,070	2,412	600	-	9	894	14,464	14,686	-	405	-	-
	대로	3	1,907	66,362	6,980	49,070	10,245	6	1	286	10,245	-	-	10,245	-	-	1	1,382	40,130	-	40,070	-	600	-	1	239	6,980	6,980	-	-	-	-
	중로	10	2,693	49,584	26,085	6,376	17,129	-	3	1,378	24,434	5,974	6,376	17,129	-	-	4	840	13,740	13,740	-	-	-	-	3	475	6,370	6,370	-	-	-	-
	소로	11	894	7,452	4,258	-	3,193	-	2	61	729	352	-	377	-	-	4	653	5,609	3,197	-	2,412	-	-	5	180	1,113	708	-	405	-	-
특수 도로	계	6	128	964	844	-	120	-	-	-	-	-	-	-	-	-	1	20	160	160	-	-	-	-	5	108	804	684	-	120	-	-
	중로	1	26	311	311	-	-	-	-	-	-	-	-	-	-	-	-	-	-	-	-	-	-	-	1	26	311	311	-	-	-	-
	소로	5	102	652	532	-	120	-	-	-	-	-	-	-	-	-	1	20	160	160	-	-	-	-	4	82	492	372	-	120	-	-

※가감속차선 및 가감전제 등 포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96	31~37	주간선 도로	3,750 (1,382)	오류동 (광로19)	항동 시계간	일반도로	-	-	근린공원1, 중로3-4 중복결정 2공구, 4공구
기정	대로	1	1	37~40	주간선 도로	286	항동 216-13	항동 216-6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3공구
기정	대로	3	1	28.5	집산도로	239	대로 2-96	중로1-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중로	1	1	20.5~26.5	집산도로	794	대로 2-96	대로 2-96	일반도로	-	"	3공구
기정	중로	1	2	20.5	집산도로	293	대로 2-96	중로1-3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2공구
기정	중로	1	3	20.5	집산도로	291	항동 222-13	중로3-4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중로	2	2	15~16	집산도로	142	중로 1-1	항동 160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변경	중로	2	2	15~16	집산도로	142	중로 1-1	항동 160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중로	2	4	18	집산도로	245	대로 2-1	대로 2-96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88	대로2-96	중로 1-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265	대로 3-1	중로 1-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4-208호 (2014.04.21)	1공구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00	대로 3-1	대로3-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200	대로 3-1	대로3-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중로	3	2	14	집산도로	82	중로 1-3	항동 13-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193	중로 1-1	항동 145-4	일반도로	-	"	1공구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193	중로 1-1	항동 145-4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중로	3	4	12	특수도로	26	대로 2-96	중로 2-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제2018-763호 (2018.12.12)	대로2-96 중복결정, 1공구
기정	소로	1	1	11.5	국지도로	31	항동 213	항동 213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변경	소로	1	1	11.5	국지도로	31	항동 213	항동 213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	소로	1	2	11.3	국지도로	30	대로2-96	항동 54-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3공구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32	중로 3-4	소로 2-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4-238호 (2014.04.21)	1공구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8	중로 1-3	소로 2-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20	대로 2-96	항동 220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7	중로1-1	항동 190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	소로 2-1	소로 3-5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	소로 2-1	소로 3-6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33	중로 3-3	항동 145-5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	소로	2	5	6~15	국지도로	266	소로 1-1	항동 산45	일반도로	-	"	3공구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9	소로 3-1	항동 22-4	보행자 전용도로	-	"	1공구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0	소로 3-2	항동 22-5	보행자 전용도로	-	"	1공구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0	대로 2-96	항동 216-3	보행자 전용도로	-	"	3공구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43	중로 2-4	항동 산50-1	보행자 전용도로	-	"	1공구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67	소로1-2	항동 223	일반도로	-	"	3공구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63	중로 3-3	항동 150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주)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	중로2-2	· 도로선형 변경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3-1	중로3-1	· 도로선형 변경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3-3	중로3-3	· 도로선형 변경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1-1	소로1-1	· 도로선형 변경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도로 변경

2) 철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항동 222-65철	항동 216-5철	-	1,215	9,124	-	9,124	-	· 도로중복결정 (626㎡포함) · 2공구

3)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항동 182답 일원	1,544	-	1,544	국토부 제2021-918호 (2021.06.30)	· 공간적 범위 결정 · 3공구

○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항동 182답 일원	면적 (연면적)	635m ²	-	635m ²	국토부 제2021-918호 (2021.06.30)	
				층수	지하1층	-	지하1층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54,838.5 (146,570.5)	감)10.0	254,828.5 (146,560.5)	-	·지구내 푸른수목원 108,238㎡ 포함
기정	1	푸른 수목원	근린공원	항동 31공원 일원	200,956.0 (92,688.0)	-	200,956.0 (92,688.0)	서울시 제2005-185호 (2005.12.15)	·해주시 분구 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 중복결정 (124㎡) ·광명·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2공구 : 90,124.2㎡ ·4공구 : 2,563.8㎡
기정	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항동 76-1전 일원	14,425.6	-	14,425.6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5공구
변경	3	제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항동 산50-2임 일원	12,559.4	감)9.9	12,549.5	〃	·1공구
변경	4	제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항동 산50-3임 일원	14,084.5	감)0.1	14,084.4	〃	·1공구
기정	1	제1호 체육공원	체육공원	항동 162전 일원	12,813.0	-	12,813.0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3공구

주) ()는 지구내 공원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제3호 근린공원	· 근린공원 변경 - 면적 : 12,559.4㎡ → 12,549.5㎡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4	제4호 근린공원	· 근린공원 변경 - 면적 : 14,084.5㎡ → 14,084.4㎡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	35,746.7	감)20.2	35,726.5	-	
소계			-	-	11,845.2	감)4.6	11,840.6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항동 산50-9임 일원	1,246.2	-	1,246.2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항동 산50-5임 일원	2,768.0	-	2,768.0	"	3공구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항동 216-11답 일원	3,025.0	-	3,025.0	"	3공구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항동 216-2답 일원	738.0	-	738.0	"	2공구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항동 211-23답 일원	4,068.0	감)4.6	4,063.4	"	3공구
소계			-	-	15,127.1	감)16.3	15,110.8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항동 100답 일원	1,046.0	-	1,046.0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3공구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항동 100-6답 일원	1,353.0	-	1,353.0	국토부 제2014-218호 (2014.04.21)	2공구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항동 190전 일원	1,157.0	-	1,157.0	"	3공구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항동 산44-1임 일원	3,915.5	-	3,915.5	"	1공구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항동 산48-1임 일원	2,954.6	-	2,954.6	"	3공구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항동 산50-1임 일원	3,567.0	감)17.3	3,549.7	"	3공구→ 1공구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항동 193-2답 일원	700.4	증)1.0	701.4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항동 145-7대 일원	433.6	-	433.6	국토부 제2010-539호 (2010.08.31)	1공구
소계			-	-	8,774.4	증)0.7	8,775.1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항동 100답 일원	5,641.2	-	5,641.2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항동158-1전 일원	1,196.6	-	1,196.6	"	1공구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항동 산50-1임 일원	1,136.6	증)0.7	1,137.3	국토부 제2019-952호 (2019.12.31)	1공구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항동 216-13답 일원	800.0	-	800.0	"	3공구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 면적 : 4,068.0㎡ → 4,063.4㎡	· 1공구 지적화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선형 변경	· 1공구 지적화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6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 면적 : 3,567.0㎡ → 3,549.7㎡	· 1공구 지적화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7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 면적 : 700.4㎡ → 701.4㎡	· 1공구 지적화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3	연결녹지	· 연결녹지 변경 - 면적 : 1,136.6㎡ → 1,137.3㎡	· 1공구 지적화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연결녹지 변경

3)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75	-	1,375	-	
기정	1	광장	경관광장	향동 214-3전 일원	1,375	-	1,375	국토부 제2014-238호 (2014.04.21)	2공구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2,144.4	감)1.0	12,143.4	-	
기정	1	공공공지	향동 31-1도 일원	1,333.4	-	1,333.4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	2	공공공지	향동 118-2대 일원	2,355.0	-	2,355.0	〃	2공구
기정	3	공공공지	향동 110-2철 일원	1,497.0	-	1,497.0	〃	2공구
기정	4	공공공지	향동 100답 일원	539.0	-	539.0	〃	3공구
기정	5	공공공지	향동 100-6답 일원	1,220.0	-	1,220.0	〃	2공구
기정	6	공공공지	향동 111-3답 일원	314.0	-	314.0	〃	훼손지복구용지내, 2공구
기정	7	공공공지	향동 200-1답 일원	471.0	-	471.0	〃	훼손지복구용지내, 2공구
기정	8	공공공지	향동 199-4수 일원	327.0	-	327.0	〃	훼손지복구용지내, 2공구
기정	9	공공공지	향동 183-1답 일원	1,112.1	-	1,112.1	〃	1공구
기정	10	공공공지	향동 190전 일원	481.0	-	481.0	〃	3공구
기정	11	공공공지	향동 162전 일원	921.0	-	921.0	〃	3공구
기정	12	공공공지	향동 193-2답 일원	602.5	-	602.5	〃	1공구
기정	13	공공공지	향동 160전 일원	430.2	-	430.2	〃	1공구
변경	14	공공공지	향동 215답 일원	496.0	감)1.0	495.0	〃	1공구
기정	15	공공공지	향동 160전 일원	45.2	-	45.2	국토부 제2019-952호 (2019.12.31)	1공구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공공공지	· 공공공지 변경 - 면적 : 496.0㎡ → 495.0㎡	· 1공구 지적화정측량 결과(변경) 반영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2,146.7	-	22,146.7	-	
기정	1	학교	유치원	향동 159전 일원	1,600.3	-	1,600.3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향동 160전 일원	9,994.3	-	9,994.3	〃	1공구
기정	3	학교	중학교	향동 100답 일원	10,552.1	-	10,552.1	〃	1공구

라. 유통·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 시설	-	-	-	-	2,107 (2,107)	-	2,107 (2,107)	서고시 1997-335호	1공구

주) ()는 지구를 통과하는 수도공급설비의 지구내 면적임

마. 방제시설

1) 하천(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천	소하천	향동 22-1	향동 162	-	992 (906)	15 ~30	22,936 (22,859)	-	22,936 (22,859)		도로 및 철도 중복결정(2,366m ²) 포함 면적,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하수도 중복결정 2공구

주)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천의 지구내 연장, 면적임

2)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423	-	9,423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향동 111-3답 일원	2,836	-	2,836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중복결정, 2공구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향동 164전 일원	2,512	-	2,512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체육공원1 중복결정, 3공구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향동 198-2답 일원	4,075	-	4,075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중복결정, 2공구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하수도 (간선하수도) 역곡1,LINE	부천 소사구 괴안동 180-5	부천 소사구 옥길동 561-7	서울 구로구 항동 222-13	1,764 (1,015)	5,987.2 (2,941)	-	5,987.2 (2,941)	-	서울시 편입면적 (2,137.5m ²) 초기우수처리장 (2,138m ²) 2공구
기정	19	하수도 (차집관로)	서울 구로구 항동 222-57	부천 옥길동 668-32	서울 구로구 항동 222-57	753 (134)	1,882 (347)	-	1,882 (347)	국토부 제2018-763호 (2018.12.12)	2공구

주)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수도의 지구내 연장, 면적임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	항동 58-1답	13,447	-	13,447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지하중로결정 (13,447m ²) 2공구

5.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662,464.9	감)26.6	662,438.3	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6호 (21. 11. 0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감 26.6m ²) · 면적 : 662,464.9m ² → 662,438.3m ²	· 1공구 지적확정측량 결과(변경) 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내용으로 같음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같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구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8,045.4	-	-	8,045.4	필지한변 5개필지 이내에서만 허용
	-	단독1	2,385.6	1	구로구 향동 22-4답 일원	265.2	
				2	구로구 향동 22-4답 일원	265.1	
				3	구로구 향동 22-4답 일원	264.9	
				4	구로구 향동 22-4답 일원	265.1	
				5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0	
				6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1	
				7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4.8	
				8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0	
				9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4	
	-	단독2	3,658.3	1	구로구 향동 22-4답 일원	265.2	
				2	구로구 향동 22-5답 일원	264.8	
				3	구로구 향동 22-5답 일원	264.9	
				4	구로구 향동 22-5답 일원	370.4	
				5	구로구 향동 22-5답 일원	265.1	
				6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1	
				7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1	
				8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3	
				9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1	
				10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3	
				11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3	
				12	구로구 향동 22-4답 일원	265.2	
				13	구로구 향동 22-4답 일원	371.5	
	-	단독3	941.4	1	구로구 향동 22-5답 일원	411.2	
				2	구로구 향동 22-5답 일원	265.0	
				3	구로구 향동 22-5답 일원	265.2	
	-	단독4	1,060.1	1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3	
				2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5.1	
				3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4.9	
				4	구로구 향동 22-10답 일원	264.8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206,980.5	-	-	206,980.5	아파트
	-	1BL~ 8BL	206,980.5	1BL	구로구 향동 100-5답 일원	24,883.9	
				2BL	구로구 향동 118-20대 일원	28,087.3	
				3BL	구로구 향동 131-3대 일원	50,056.4	
				4BL	구로구 향동 83저 일원	13,923.2	
				5BL	구로구 향동 154저 일원	39,948.1	
				6BL	구로구 향동 216-1답 일원	17,431.5	
				7BL	구로구 향동 207-1저 일원	18,224.4	
				8BL	구로구 향동 산50-3임 일원	14,425.7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12,717.5	-	-	12,717.5	획지분할 불가,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내에서만 허용
	-	근생1	2,100.8	1	구로구 향동 80-1저 일원	1,045.2	
				2	구로구 향동 80-7답 일원	1,055.6	
	-	근생2	3,129.1	1	구로구 향동 88대 일원	810.3	
				2	구로구 향동 128-14저 일원	803.4	
				3	구로구 향동 128-2저 일원	798.9	
				4	구로구 향동 125-1저 일원	716.5	
	-	근생3	3,298.1	1	구로구 향동 123저 일원	776.0	
				2	구로구 향동 119-6답 일원	848.7	
				3	구로구 향동 122저 일원	849.8	
				4	구로구 향동 121-1대 일원	823.6	
	-	근생4	1,673.9	1	구로구 향동 179-1저 일원	839.0	
				2	구로구 향동 177-2답 일원	834.9	
	-	근생5	591.7	1	구로구 향동 13-1대 일원	591.7	
	-	근생6	1,923.9	1	구로구 향동 193답 일원	1,923.9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23,311.4	-	23,311.4	획지분할 불가
	-	도생1	8,150.4	구로구 향동 136-1대 일원	8,150.4	
	-	도생2	8,147.3	구로구 향동 135-1대 일원	8,147.3	
	-	도생3	7,013.7	구로구 향동 184답 일원	7,013.7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27,956.3	-	27,956.3	획지부하 가능선에 따라 분할 허용
	-	업무1	7,402.2	향동 산52-1묘 일원	7,402.2	
	-	업무2	8,320.3	향동 산50-1임 일원	8,320.3	
	-	업무3	12,233.8	향동 206-1전 일원	12,233.8	

6)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2,307.4	-	2,307.4	
	-	커뮤니티	2,307.4	향동 176-2전 일원	2,307.4	

7) 유치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1,600.3	-	1,600.3	
	-	유	1,600.3	향동 159전 일원	1,600.3	

8) 초등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9,994.3	-	9,994.3	
	-	초	9,994.3	향동 160전 일원	9,994.3	

9) 중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10,552.1	-	10,552.1	
	-	중	10,552.1	향동 100답 일원	10,552.1	

10)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4,013.3	-	4,013.3	
	-	주1	1,544	향동 182답 일원	1,544	
	-	주2	795.4	향동 22-10답 일원	795.4	
	-	주3	1,673.9	향동 83전 일원	1,673.9	

11)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	3,865.5	-	3,865.5	종교 종교 종교 사회복지
	-	편익1	1,149.8	구로구 향동 190전 일원	1,149.8	
	-	편익2	660.4	구로구 향동 산36임 일원	660.4	
	-	편익3	960.2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960.2	
	-	편익4	1,095.1	구로구 향동 183-6답 일원	1,095.1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계	-	1,308.3	-	1,308.3	
	-	주유1	1,308.3	항동 산53입 일원	1,308.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단1 ~ 단4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바목 내지 자목 - 점포 주택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면적의 5분의 2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함.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허용가구수		• 5가구 이하
	배 치		• 단독주택 건축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방향을 정남(正南)으로 적용한다.
	형 태		- 지붕형태는 주위의 경관에 어울리게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도는 10:3 이내로 하고, 지붕의 최고높이를 1.5m 이하로 한다.(가중평균 높이 아님) 또한,(신설)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 형성에 일조한다.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권장한다.
	색 채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한다.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1BL 2BL 3BL 4BL 5BL 6BL 7BL 8BL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부대복리시설 중 다지내 상가, 분사상가 등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BL, 2BL, 3BL, 6BL, 7BL : 220%이하 4BL, 8BL : 200%이하 5BL : 180%이하
	높이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지정된 최고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발고도 82m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건축물의 높이는 획일적인 계획으로 다지경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및 주요 경관요소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배치		- 건축물(주동)의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각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 ① 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함 ② 탑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함 - 단, 접도방향 또는 대지경계선, 통경축에 대하여 $\pm 22.5^\circ$범위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직각배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아파트 주동배치 지양구역 - 아파트 주동배치 지양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은 지하공간의 서서울고속도로 설치에 따른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아파트 주동배치를 지양하고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를 권장 - 바람길 확보 -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 배치하고 판상형의 경우 바람길과 순응하도록 배치하여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배치 권장
	형태		- 박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은 외벽의 형태와 색채에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 건축물의 외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 모든 공동주택의 외벽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단지명이나 회사의 심볼을 표시할 경우 측벽에 한하여 허용하며 글자를 표시할 경우 서체는 현대적이고 가결한 글씨체를 사용할 것을 권장 - 건축물 배치에 따라 인동간격,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 단절 등에 따른 동선의 우회, 시각적 차폐감을 해소하고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하여 피로티를 설치할 수 있음 - 피로티 설치시 구조의 최소높이는 통경 확보 등 시야차단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 이상 설치 한다. 다만, 라베구조의 경우 구조안전이 확보되고 주동출입 및 보행통로로 사용되는 경우 1개층으로 할수 있다. - 공동주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거나 지붕에 옥상녹화, 태양광 집열판등의 친환경 설계요소가 적용된 경우는 그 예외로 할수 있다. - 경사지붕 설치 시 조성 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함 -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의 색채는 공동주택의 외벽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위색의 사용을 지양 -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구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1BL 2BL 3BL 4BL 5BL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위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6BL 7BL 8BL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함 -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여야함

<별표 1>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유형,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양형태(변경없음)

블록	구분	대지면적(m²)	평균주택 규모(m²)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공동주택(아파트)		206,980.5		4,232	82.9	10,581		
	1BL	소계	24,883.9		419	8.2	1048	
		60~85m²	(8,373.8)	74	141	2.8	353	일반분양
		60~85m²	(12,471.7)	84	210	4.1	525	일반분양
		85m²초과	(4,038.4)	101	68	1.3	170	일반분양
	2BL	소계	28,087.3		646	12.7	1,615	
		60m²이하	(10,956.6)	59	252	4.9	630	국민임대
		60m²이하	(8,478.4)	59	195	3.8	488	공공분양
		60~85m²	(5,739.2)	74	132	2.6	329	공공분양
		60~85m²	(2,913.1)	84	67	1.3	168	공공분양
	3BL	소계	50,056.4		1,170	22.9	2,924	
		60m²이하	(3,208.7)	39	75	1.5	187	국민임대
		60m²이하	(3,208.7)	49	75	1.5	187	국민임대
		60m²이하	(12,321.6)	59	288	5.6	720	국민임대
		60m²이하	(17,027.8)	59	398	7.8	995	공공분양
		60~85m²	(9,241.2)	74	216	4.2	540	공공분양
		60~85m²	(5,048.4)	84	118	2.3	295	공공분양
	4BL	소계	13,923.2		297	5.8	743	
		60m²이하	(1,687.7)	49	36	0.7	90	국민임대
		60m²이하	(3,328.4)	59	71	1.4	178	국민임대
		60m²이하	(8,907.1)	59	190	3.7	475	공공분양
	5BL	소계	39,948.1		634	12.4	1,585	
		60~85m²	(13,421.0)	74	213	4.2	533	일반분양
		60~85m²	(20,037.1)	84	318	6.2	794	일반분양
		85m²초과	(6,490.0)	101	103	2.0	258	일반분양
	6BL	소계	17,431.5		337	6.6	843	
		60~85m²	(5,845.0)	74	113	2.2	282	일반분양
		60~85m²	(8,741.6)	84	169	3.3	423	일반분양
		85m²초과	(2,844.9)	101	55	1.1	138	일반분양
	7BL	소계	18,224.4		345	6.8	863	
		60~85m²	(6,127.6)	74	116	2.3	290	일반분양
		60~85m²	(9,138.6)	84	173	3.4	433	일반분양
		85m²초과	(2,958.2)	101	56	1.1	140	일반분양
	8BL	소계	14,425.7		384	7.5	960	
		60m²이하	(6,499.1)	39	173	3.4	432	국민임대
		60m²이하	(4,921.3)	49	131	2.6	328	국민임대
		60m²이하	(3,005.3)	59	80	1.6	200	국민임대

-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대지지분(괄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름
 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8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원룸형 30%이상 확보는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산정

3)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근생 1~6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근생1~3 : 60% 이하 - 근생5 : 60% 이하 - 근생4,6 : 50% 이하
	용적률		- 근생1~3 : 350% 이하 - 근생4,6 : 250% 이하 - 근생5 : 200% 이하
	높이		- 근생1~3 : 8층 이하 - 근생4,6 : 7층 이하 - 근생5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한다
	형 태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 전면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 1/2 이상은 투시형 벽으로 처리토록 하며, 셔터 설치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물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색 채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고정시설물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 1.5m~3m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도생 1~3	용 도	허용 용도	-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중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제2호에 의한 원룸형주택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해발고도 82m 이하(「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배제)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 한다
	형 태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 전면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 1/2 이상은 투시형 벽으로 처리토록 하며, 셔터 설치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물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색 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한다. 단,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고정시설물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 : 1.5~5m

<별표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의 주택유형,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양형태(변경없음)

블록	구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23,311.4		871	17.1	1,568		
도시 형 생 활 주 택	1	소계	8,150.4		298	5.8	536	
		60㎡이하	(5,442.7)	29	199	3.9	358	행복주택
		60㎡이하	(2,707.7)	39	99	1.9	178	행복주택
	2	소계	8,147.3		297	5.8	535	
		60㎡이하	(5,349.2)	29	195	3.8	352	행복주택
		60㎡이하	(2,798.1)	39	102	2.0	183	행복주택
	3	소계	7,013.7		276	5.4	497	
		60㎡이하	(4,625.0)	29	182	3.6	328	행복주택
		60㎡이하	(2,388.7)	39	94	1.8	169	행복주택

주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대지지분(괄호)은 주택거점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른다

주2)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

주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8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원룸형 30%이상 확보는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산정

5) 업무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업무1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 ※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옥외절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해발고도 82m 이하(「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배제)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한다
	형 태	- 건축물의 전면 길이가 25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가로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함 -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1층 바닥높이는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5센티미터 이내로 함 - 옥탑, 물탱크 등 건축물의 부속설비와 냉난방기의 실외기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함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한다. - 간판에 네온, 전광, 전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한다.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색 채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고정시설물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 : 3m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업무2 업무3	용 도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해발고도 82m 이하(「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배제)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한다
	형 태		- 건축물의 전면 길이가 25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가로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함 -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1층 바닥높이는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5센티미터 이내로 함 - 옥탑, 물탱크 등 건축물의 부속설비와 냉난방기의 실외기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함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한다. - 간판에 네온, 전광, 전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한다.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색 채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고정시설물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 : 3m

6)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커뮤니티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주민센터 등)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학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의 10%이내 한함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7층 이하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재료와 건물의 상부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용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3m

7)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유 초 중	용 도	허용 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유치원 용지의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학원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범위 내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독서실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불허 용도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초등학교 중학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유 초 중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유치원 : 4층이하 • 초등학교, 중학교 : 5층이하
	배 치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함
	형 태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채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도모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광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입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학교설치상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건축한계선 : 5m

8)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1	용 도	• 주차전용건축물임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은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노외주차장에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중 다음의 용도에 한해 허용하며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중 세차장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 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권장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권장한다
	형 태	•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불가함(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개방(창문 포함)을 해서는 아니된다.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 • 생태주차장(50%이상)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전체 50% 이상)사용을 권장함 • 옥외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위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구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2 주3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은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노외주차장에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중 다음의 용도에 한해 허용하며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 -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중 세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율		80%이하
	용 적률		- 주2 : 150%이하 - 주3 : 300%이하
	높 이		- 주2 : 4층 이하 - 주3 : 5층 이하
	배 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권장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권장한다
	형 태		-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불가함(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개방(창문 포함)을 해서는 아니된다.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 - 생태주차장(50%이상)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전체 50% 이상)사용을 권장함 - 옥외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3m

9)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편익 1~4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불아담 제외) 및 그 부속용도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목회자숙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등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주용도	- 편익1,2,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불아담 제외) 및 그 부속용도 - 편익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주용도는 해당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과하변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편익1,2,4 : 50% 이하 - 편익3 :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편익4 : 7층 이하 - 편익1,2,3 : 5층이하(단,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m 이내(첨탑의 높이 포함))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저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재료와 건물의 상부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조명의 설치를 금지하여,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외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호환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편익2,3 : 1.5m, 편익1,4 : 1.5~3m

10) 주유소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유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단, 소방기숙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 취 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이		3층이하
	형 태		- 옥외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에 과하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단독 1~4	대지내 공지		- 다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곳곳주택 공간으로 조성한다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교목 또는 관목(조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 단독 및 점포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에는 익점면적 이상에 대하여 과목(조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부로 조성한다. - 조경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차량 출입구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보행구가이외에 설치한다 - 단독주택용지내 도로계획시 구역 외부 진입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주차대수안정 및 주차장 설치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1세대당 1대이상'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감화되 기주이상을 설치한다.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감화되 기주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1BL 2BL 3BL 4BL 5BL 6BL 7BL 8BL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있게 조성한다. - 대지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 대지경계변에 학교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대지내 도로	- 대지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부설 주차장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보행자 통로	- 대지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 대지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경계변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1개소이상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단, 보행자 통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방법,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보행동선 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대 및 복리시설	- 부대시설은 대지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친환경 계획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3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확보한다. - 녹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1BL 2BL 3BL 4BL 5BL 6BL 7BL 8BL	대지내 공지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서울타리를 설치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도로 포장	•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보도 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근생 1~6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 전면 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차량 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함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도생 1~3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대지경계면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차량 출입구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서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에 의한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에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차량출입시 유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함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도시형생활주택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업무 1~3	대지내 공지	- 거주하계서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방벽공간으로 확보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결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주차장	- 조각대에는 '주차자비' 및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자 서키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6) 복합커뮤니티시설, 주거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편의 커뮤니티	대지내 공지	- 거주하계서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방벽공간으로 확보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결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주차장	조각대에는 '주차자비'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중에서 강한 규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담장	- 거주하계서에서 지정된 담장 높이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함
	옥상구조 및 차폐, 옥상조경	- 건물이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또는 그와 동등한 차폐를 설치한다. - 도시하계서에서 지정된 옥상조경을 권장하며, 조성방식 및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함

7)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유 초 중	대지내 공지	거주하계서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교육환경향상, 방음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방벽등의 의해 출입구 내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조각대에는 그 조각대이 만으로 확보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방벽은 출입구는 하새드이 저그바하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담장	- 거주하계서에서 지정된 담장 높이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로 함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 1~3	대지내 공지	- 거주하계서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공간으로 확보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결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차량 출입구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 당 2개소 이내, 폭은 6.5m 이내에서 설치 가능
	담장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함

9) 주유소용지(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대지내 공지	- 거주하계서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하여 공간으로 확보한다 -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인구와 측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붙임 3]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m ²)	비 고
계	341	160,949.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62	54,874	
하천	1	258	
구거	51	25,617	
제방	11	423	
철도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 기 정

구 분	면 적 (m ²)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725.0	103,643.6	187,210.2	64,821.8	2,623.8	14,425.6	
도 로	124,359.0	38,163.8	55,453.0	30,682.2	60.0	-	- 30개 노선(하천2,156m ² , 수도공급시설225m ² , 하수도246m ² 중복결정) ※ 철도 중복면적(626m ²)제외
공 원	146,570.5	26,64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m ²), 도로:124m ² 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m ² 중복결정)
녹 지	35,746.7	14,270.1	2,091.0	19,385.6	-	-	- 17개소
공공공지	12,144.4	4,019.4	6,184.0	1,941.0	-	-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m ² , 하수도:975m ² 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 (수도공급시설:2m ² , 하수도:2,045m ² , 도로:2,156m ² , 철도:210m ²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 (준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 (초등학교,중학교)

○ 변 경

구 분	면 적 (m ²)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698.4	107,188.6	187,210.2	61,250.2	2,623.8	14,425.6	
도 로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 30개 노선(하천2,156m ² , 수도공급시설225m ² , 하수도246m ² 중복결정) ※ 철도 중복면적(626m ²)제외
공 원	146,560.5	26,63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m ²), 도로:124m ² 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m ² 중복결정)
녹 지	35,726.5	17,821.5	2,091.0	15,814.0	-	-	- 17개소
공공공지	12,143.4	4,018.4	6,184.0	1,941.0	-	-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m ² , 하수도:975m ² 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 (수도공급시설:2m ² , 하수도:2,045m ² , 도로:2,156m ² , 철도:210m ²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 (준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 (초등학교,중학교)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현 동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부천시, 국가철도공단(존치철도)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자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천시	비 고
계	필지수	341	97	5	155	53	31
	면적 (㎡)	계	160,949.7	53,615	4,736	69,735.2	30,556.5
		유상	44,438.4	14,535	4,515	2,149.4	22,967.0
		존치	7,942.0	7,942	-	-	272
		무상	108,569.3	31,138	221	67,585.8	7,589.5
유	필지수	1	-	-	-	1	-
	면적 (㎡)	계	506	-	-	506	-
		유상	-	-	-	-	-
		존치	-	-	-	-	-
		무상	506	-	-	506	-
수	필지수	12	-	-	-	-	12
	면적 (㎡)	계	1,307	-	-	-	1,307
		유상	-	-	-	-	-
		존치	-	-	-	-	-
		무상	1,307	-	-	-	1,307
임	필지수	12	-	-	9	2	1
	면적 (㎡)	계	22,451	-	3,671	18,655	125
		유상	18,978	-	198	18,655	125
		존치	-	-	-	-	-
		무상	3,473	-	3,473	-	-
구	필지수	51	42	-	-	9	-
	면적 (㎡)	계	25,617	24,467	-	1,150	-
		유상	3,044	3,037	-	7	-
		존치	-	-	-	-	-
		무상	22,573	21,430	-	1,143	-
답	필지수	68	-	-	42	12	14
	면적 (㎡)	계	15,685	-	14,357	540	788
		유상	692	-	317	228	147
		존치	-	-	-	-	-
		무상	14,993	-	14,040	312	641
대	필지수	30	-	2	26	2	-
	면적 (㎡)	계	6,251.7	-	3,389	1,972.2	890.5
		유상	4,456.4	-	3,333	242.4	881.0
		존치	-	-	-	-	-
		무상	1,795.3	-	56	1,729.8	9.5
도	필지수	62	18	-	24	19	1
	면적 (㎡)	계	54,874.0	11,381	38,460	5,022	11
		유상	1,829	1,730	99	-	-
		존치	-	-	-	-	-
		무상	53,045	9,651	38,361	5,022	11
전	필지수	57	-	3	46	8	-
	면적 (㎡)	계	16,068	-	1,347	10,928	3,793
		유상	5,671	-	1,182	1,293	3,196
		존치	-	-	-	-	-
		무상	10,397	-	165	9,635	597
제	필지수	11	-	-	8	-	3
	면적 (㎡)	계	423	-	347	-	76
		유상	-	-	-	-	-
		존치	-	-	-	-	-
		무상	423	-	347	-	76

소관청 자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천시	비 고
천	필지수		1	1	-	-	-	-	
	면적 (m ²)	계	258	258	-	-	-	-	
		유상	201	201	-	-	-	-	
		존치	-	-	-	-	-	-	
		무상	57	57	-	-	-	-	
철	필지수		36	36	-	-	-	-	
	면적 (m ²)	계	17,509	17,509	-	-	-	-	
		유상	9,567	9,567	-	-	-	-	
		존치	7,942	7,942	-	-	-	-	
		무상	-	-	-	-	-	-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국(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m ²)	유상귀속 면적(m ²)	무상귀속 면적(m ²)	존치면적 (m ²)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53-1	철	국(국토교통부)	235	111	-	124	
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56-2	철	국(국토교통부)	338	186	-	152	
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57-2	철	국(국토교통부)	1,358	521	-	837	
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1-3	철	국(국토교통부)	265	28	-	237	
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1-5	철	국(국토교통부)	745	210	-	535	
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2-2	철	국(국토교통부)	83	83	-	-	
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92-2	철	국(국토교통부)	721	212	-	509	
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9-2	철	국(국토교통부)	10	10	-	-	
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0-2	철	국(국토교통부)	2,371	1,624	-	747	
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0-3	철	국(국토교통부)	77	48	-	29	
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0-4	철	국(국토교통부)	45	31	-	14	
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2-1	철	국(국토교통부)	235	134	-	101	
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6-2	철	국(국토교통부)	553	553	-	-	
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7-4	철	국(국토교통부)	377	205	-	172	
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7-5	철	국(국토교통부)	202	144	-	58	
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7-6	철	국(국토교통부)	496	336	-	160	
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4	철	국(국토교통부)	23	15	-	8	
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5	철	국(국토교통부)	522	218	-	304	
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0	천	국(국토교통부)	258	201	57	-	
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7-2	철	국(국토교통부)	242	69	-	173	
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5	철	국(국토교통부)	699	477	-	222	
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0	철	국(국토교통부)	61	38	-	23	
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1	철	국(국토교통부)	68	39	-	29	
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5	철	국(국토교통부)	19	17	-	2	
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1-1	철	국(국토교통부)	7	7	-	-	
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3-1	철	국(국토교통부)	26	24	-	2	
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4-2	철	국(국토교통부)	149	72	-	77	
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5	철	국(국토교통부)	159	92	-	67	
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7	철	국(국토교통부)	215	126	-	89	
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3	구	국(국토교통부)	425	389	36	-	
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5	철	국(국토교통부)	1,909	705	-	1,204	
3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	구	국(국토교통부)	3	-	3	-	
3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4	구	국(국토교통부)	73	-	73	-	
3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5	구	국(국토교통부)	12	-	12	-	
3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	구	국(국토교통부)	104	-	104	-	
3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54	구	국(국토교통부)	9	-	9	-	
3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7	구	국(국토교통부)	335	271	64	-	
3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8	구	국(국토교통부)	309	-	309	-	
3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9	구	국(국토교통부)	256	-	256	-	
4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10	구	국(국토교통부)	33	-	33	-	
4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6	구	국(국토교통부)	2,626	-	2,626	-	
4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14	구	국(국토교통부)	862	590	272	-	
4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15	구	국(국토교통부)	7	-	7	-	
4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56	구	국(국토교통부)	103	-	103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존치면적 (㎡)	비고
		시군	리동	지번							
4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2	구	국(국토교통부)	539	-	539	-	
4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70	구	국(국토교통부)	582	-	582	-	
4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17	구	국(국토교통부)	5	-	5	-	
4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18	구	국(국토교통부)	34	-	34	-	
4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19	구	국(국토교통부)	32	-	32	-	
5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20	구	국(국토교통부)	6	-	6	-	
5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7	구	국(국토교통부)	3,083	165	2,918	-	
5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22	구	국(국토교통부)	71	27	44	-	
5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23	구	국(국토교통부)	126	75	51	-	
5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24	구	국(국토교통부)	22	-	22	-	
5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8	구	국(국토교통부)	98	-	98	-	
5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9	구	국(국토교통부)	68	-	68	-	
5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3	구	국(국토교통부)	13	-	13	-	
5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4	구	국(국토교통부)	47	-	47	-	
5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5	구	국(국토교통부)	251	-	251	-	
6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6	구	국(국토교통부)	45	-	45	-	
6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7	구	국(국토교통부)	24	-	24	-	
6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8	구	국(국토교통부)	1,791	1,012	779	-	
6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59	구	국(국토교통부)	130	-	130	-	
6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60	구	국(국토교통부)	154	-	154	-	
6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39	구	국(국토교통부)	71	-	71	-	
6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40	구	국(국토교통부)	95	-	95	-	
6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41	구	국(국토교통부)	4,940	-	4,940	-	
6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57	구	국(국토교통부)	5,031	-	5,031	-	
6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58	구	국(국토교통부)	549	-	549	-	
7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2-42	구	국(국토교통부)	288	-	288	-	
7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3-1	도	국(국토교통부)	2	-	2	-	
7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3-2	도	국(국토교통부)	203	-	203	-	
7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3-3	도	국(국토교통부)	772	-	772	-	
7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	도	국(국토교통부)	4,143	270	3,873	-	
7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2	도	국(국토교통부)	4	-	4	-	
7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3	도	국(국토교통부)	15	-	15	-	
7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4	도	국(국토교통부)	125	-	125	-	
7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5	도	국(국토교통부)	1	-	1	-	
7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6	도	국(국토교통부)	282	-	282	-	
8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7	도	국(국토교통부)	37	-	37	-	
8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4-8	도	국(국토교통부)	1,969	-	1,969	-	
8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5	도	국(국토교통부)	605	576	29	-	
8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7	도	국(국토교통부)	446	-	446	-	
8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8	구	국(국토교통부)	1,212	508	704	-	
8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8-2	구	국(국토교통부)	3	-	3	-	
8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9	도	국(국토교통부)	1,187	884	303	-	
8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9-1	도	국(국토교통부)	285	-	285	-	
8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9-2	도	국(국토교통부)	655	-	655	-	
8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9-3	도	국(국토교통부)	212	-	212	-	
9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9-4	도	국(국토교통부)	438	-	438	-	
9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1	철	국(국토교통부)	992	783	-	209	
9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4	철	국(국토교통부)	915	535	-	380	
9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10	철	국(국토교통부)	273	167	-	106	
9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11	철	국(국토교통부)	795	510	-	285	
9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5-1	철	국(국토교통부)	43	11	-	32	
9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5-5	철	국(국토교통부)	992	404	-	588	
9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6-3	철	국(국토교통부)	1,289	822	-	467	
합계							53,615.0	14,535.0	31,138.0	7,942.0	

○ 국(기획재정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20	대	국(기획재정부)	3,170	3,170	-	
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7-5	대	국(기획재정부)	219	163	56	
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3-4	전	국(기획재정부)	46	-	46	
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9	전	국(기획재정부)	1,032	1,032	-	
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9-1	전	국(기획재정부)	269	150	119	
합계							4,736	4,515	221	

○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59-1	도	서울특별시	632	-	632	
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59-2	전	서울특별시	431	-	431	
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60-2	전	서울특별시	753	753	-	
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61-1	답	서울특별시	14	14	-	
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62	답	서울특별시	90	90	-	
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62-1	답	서울특별시	128	128	-	
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63-5	도	서울특별시	4	-	4	
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63-6	답	서울특별시	233	-	233	
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75-1	도	서울특별시	450	-	450	
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75-2	전	서울특별시	113	-	113	
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0-5	전	서울특별시	179	-	179	
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3-1	전	서울특별시	1	-	1	
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0-6	도	서울특별시	6,916	-	6,916	
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0-10	전	서울특별시	274	-	274	
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0-11	답	서울특별시	238	-	238	
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0-12	전	서울특별시	44	-	44	
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0-13	답	서울특별시	158	-	158	
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0-14	전	서울특별시	36	-	36	
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1-9	전	서울특별시	28	-	28	
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2-9	대	서울특별시	222	-	222	
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5-10	전	서울특별시	123	-	123	
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5-16	전	서울특별시	88	-	88	
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5-17	전	서울특별시	40	-	40	
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3-2	전	서울특별시	6	-	6	
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3-3	전	서울특별시	25	-	25	
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5-1	전	서울특별시	18	-	18	
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8-2	대	서울특별시	511	-	511	
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9-2	대	서울특별시	13	-	13	
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9-5	대	서울특별시	238	-	238	
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89-6	전	서울특별시	12	-	12	
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6	답	서울특별시	283	-	283	
3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7	제	서울특별시	140	-	140	
3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8	제	서울특별시	30	-	30	
3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1	답	서울특별시	23	-	23	
3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2	제	서울특별시	4	-	4	
3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3	제	서울특별시	32	-	32	
3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7	도	서울특별시	919	-	919	
3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0	제	서울특별시	7	-	7	
3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2	제	서울특별시	17	-	17	
4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5	제	서울특별시	99	-	99	
4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6	도	서울특별시	24	-	24	
4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7	도	서울특별시	58	-	58	
4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8	제	서울특별시	18	-	18	
4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2-3	도	서울특별시	3,716	-	3,716	
4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2-4	답	서울특별시	173	-	173	
4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2-5	답	서울특별시	525	-	525	
4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3-5	답	서울특별시	682	-	682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4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4	전	서울특별시	211	211	-	
4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4-2	전	서울특별시	39	-	39	
5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4-3	전	서울특별시	280	-	280	
5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5-2	전	서울특별시	751	-	751	
5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21	도	서울특별시	381	-	381	
5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7-8	전	서울특별시	673	-	673	
5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8	대	서울특별시	49	49	-	
5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10	대	서울특별시	22.8	-	22.8	
5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24	대	서울특별시	6.4	6.4	-	
5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25	대	서울특별시	23	-	23	
5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26	대	서울특별시	26	-	26	
5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27	대	서울특별시	18	-	18	
6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29	대	서울특별시	2	-	2	
6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1	전	서울특별시	112	112	-	
6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15	도	서울특별시	2,004	-	2,004	
6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16	전	서울특별시	292	-	292	
6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17	답	서울특별시	193	-	193	
6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0-3	대	서울특별시	14	14	-	
6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0-4	대	서울특별시	7	-	7	
6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0-5	대	서울특별시	12	-	12	
6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0-6	대	서울특별시	93	93	-	
6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0-7	대	서울특별시	100	-	100	
7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0-12	대	서울특별시	102	-	102	
7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0-13	대	서울특별시	79	-	79	
7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1-2	대	서울특별시	80	80	-	
7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1-3	대	서울특별시	166	-	166	
7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1-5	대	서울특별시	72	-	72	
7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2-2	전	서울특별시	145	-	145	
7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3-3	전	서울특별시	3	-	3	
7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4-8	전	서울특별시	40	40	-	
7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5-3	대	서울특별시	8	-	8	
7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5-8	전	서울특별시	7	-	7	
8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5-10	도	서울특별시	1,911	-	1,911	
8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5-11	전	서울특별시	189	-	189	
8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5-12	대	서울특별시	32	-	32	
8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5-13	전	서울특별시	60	-	60	
8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6-5	대	서울특별시	25	-	25	
8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8-6	도	서울특별시	353	-	353	
8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8-10	전	서울특별시	501	-	501	
8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8-11	대	서울특별시	1	-	1	
8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8-12	대	서울특별시	50	-	50	
8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76-5	전	서울특별시	134	-	134	
9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76-6	전	서울특별시	360	-	360	
9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77-3	답	서울특별시	161	-	161	
9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2-1	답	서울특별시	60	-	60	
9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6	답	서울특별시	358	-	358	
9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3-8	답	서울특별시	71	-	71	
9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4-4	답	서울특별시	1,323	-	1,323	
9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4-5	도	서울특별시	1,187	-	1,187	
9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6-1	답	서울특별시	103	-	103	
9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7	답	서울특별시	69	-	69	
9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7-1	답	서울특별시	223	-	223	
10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7-2	도	서울특별시	4,685	-	4,685	
10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8	답	서울특별시	360	-	360	
10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9	답	서울특별시	443	-	443	
10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6	답	서울특별시	622	-	622	
10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8	답	서울특별시	393	-	393	
10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3-2	답	서울특별시	422	-	422	
10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3-8	전	서울특별시	1,105	-	1,105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0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2	답	서울특별시	13	13	-	
10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7	전	서울특별시	69	69	-	
10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9	전	서울특별시	716	-	716	
1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0	답	서울특별시	20	-	20	
1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1	전	서울특별시	600	-	600	
1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7	답	서울특별시	126	-	126	
1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	전	서울특별시	108	108	-	
1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1	전	서울특별시	290	-	290	
1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2	전	서울특별시	133	-	133	
1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3	도	서울특별시	1,009	-	1,009	
1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8	답	서울특별시	21	-	21	
1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0	답	서울특별시	1,981	-	1,981	
1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2	답	서울특별시	347	-	347	
1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2	도	서울특별시	4,921	-	4,921	
1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3	답	서울특별시	826	-	826	
1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5	답	서울특별시	458	-	458	
1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4-4	전	서울특별시	1	-	1	
1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4-5	전	서울특별시	570	-	570	
1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2	답	서울특별시	497	-	497	
1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3	답	서울특별시	781	-	781	
1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4	답	서울특별시	58	-	58	
1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3	답	서울특별시	25	-	25	
1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7	답	서울특별시	19	19	-	
1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0-1	전	서울특별시	313	-	313	
1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8	답	서울특별시	680	-	680	
13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0	답	서울특별시	364	-	364	
13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1	도	서울특별시	2,746	-	2,746	
13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8-2	전	서울특별시	617	-	617	
13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0-1	전	서울특별시	27	-	27	
13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0-2	전	서울특별시	162	-	162	
13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9	답	서울특별시	53	53	-	
13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1	답	서울특별시	740	-	740	
13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7-1	전	서울특별시	249	-	249	
14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33-2	임	서울특별시	166	-	166	
14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33-4	도	서울특별시	528	-	528	
14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34-12	도	서울특별시	20	-	20	
14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4	임	서울특별시	363	-	363	
14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9	임	서울특별시	2,101	-	2,101	
14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10	도	서울특별시	3,607	-	3,607	
14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2-2	도	서울특별시	99	99	-	
14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3-1	임	서울특별시	139	-	139	
14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3-2	도	서울특별시	121	-	121	
14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5	임	서울특별시	198	198	-	
15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6	임	서울특별시	232	-	232	
15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8	임	서울특별시	304	-	304	
15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9	도	서울특별시	1,742	-	1,742	
15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7	임	서울특별시	61	-	61	
15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12	임	서울특별시	107	-	107	
15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13	도	서울특별시	427	-	427	
합계							69,735.2	2,149.4	67,585.8	

○ 구로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30-1	도	구로구	1,420	-	1,420	
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93-1	도	구로구	425	-	425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16	도	구로구	94	-	94	
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7	도	구로구	138	-	138	
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8	도	구로구	185	-	185	
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4-4	도	구로구	407	-	407	
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4-5	도	구로구	314	-	314	
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7-4	도	구로구	448	-	448	
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7-7	도	구로구	1	-	1	
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31-7	도	구로구	105	-	105	
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39-3	도	구로구	76	-	76	
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40-8	도	구로구	153	-	153	
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58-3	도	구로구	105	-	105	
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58-4	도	구로구	8	-	8	
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0-2	도	구로구	284	-	284	
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1	전	구로구	349	-	349	
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2	전	구로구	18	-	18	
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3	전	구로구	214	-	214	
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4	전	구로구	4	-	4	
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4-3	전	구로구	12	-	12	
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5-1	도	구로구	114	-	114	
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9-3	도	구로구	13	-	13	
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70-1	도	구로구	707	-	707	
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71-1	대	구로구	881	881	-	
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2	구	구로구	2	-	2	
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3	구	구로구	10	-	10	
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4	답	구로구	28	-	28	
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5	답	구로구	43	-	43	
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4-1	답	구로구	10	-	10	
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1	구	구로구	29	-	29	
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2	답	구로구	7	-	7	
3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3	답	구로구	35	-	35	
3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4	답	구로구	31	-	31	
3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7-1	답	구로구	158	-	158	
3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8-2	전	구로구	35	35	-	
3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1-1	구	구로구	45	-	45	
3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1-3	답	구로구	37	37	-	
3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3-3	구	구로구	639	-	639	
3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3-5	답	구로구	81	81	-	
4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5	구	구로구	55	-	55	
4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3	구	구로구	67	-	67	
4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4	도	구로구	25	-	25	
4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8	구	구로구	7	7	-	
4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2	구	구로구	296	-	296	
4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4	답	구로구	4	4	-	
4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8	전	구로구	2,671	2,671	-	
4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0	전	구로구	490	490	-	
4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	유	구로구	506	-	506	
4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5-1	답	구로구	88	88	-	
5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9	답	구로구	18	18	-	
5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32-2	대	구로구	9.5	-	9.5	
5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2	임	구로구	18,542	18,542	-	
5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6-6	임	구로구	113	113	-	
합계							30,556.5	22,967.0	7,589.5	

○ 부천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1	답	부천시	36	-	36	
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2	답	부천시	56	-	56	
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3	답	부천시	63	-	63	
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4	답	부천시	52	52	-	
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5	답	부천시	62	62	-	
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6	답	부천시	52	-	52	
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7	답	부천시	50	-	50	
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9	답	부천시	235	-	235	
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40	답	부천시	13	-	13	
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41	도	부천시	11	-	11	
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4	답	부천시	66	-	66	
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5	답	부천시	15	-	15	
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6	답	부천시	23	-	23	
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33	답	부천시	32	-	32	
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8	제	부천시	18	-	18	
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34	제	부천시	35	-	35	
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1	제	부천시	23	-	23	
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7-2	수	부천시	14	-	14	
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7-4	수	부천시	388	-	388	
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1-2	수	부천시	116	-	116	
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6	수	부천시	83	-	83	
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7	수	부천시	171	-	171	
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4	수	부천시	303	-	303	
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2	수	부천시	111	-	111	
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3	수	부천시	5	-	5	
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5	수	부천시	4	-	4	
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5	수	부천시	1	-	1	
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6	답	부천시	33	33	-	
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5-2	수	부천시	59	-	59	
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5-3	수	부천시	52	-	52	
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6-5	임	부천시	125	125	-	
합계							2,307	272	2,035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 로(변경)

- 기 정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 계		-	30	5,622	124,359.0	38,163.8	55,453.0	30,682.2	60.0	-	
일반 도로	소 계		-	24	5,494	123,394.6	37,319.4	55,453.0	30,562.2	60.0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포함
	대로	소계	-	3	1,907	66,362.2	6,980.2	49,077.0	10,245.0	60.0	-	·훼손지 복구
		1	37~40	1	286	10,245.0	-	-	10,245.0	-	-	·용지내 포함
		2	31~37	1	1,382	49,137.0	-	49,077.0	-	60.0	-	·철도 중복결정 (626m²)
		3	28.5	1	239	6,980.2	6,980.2	-	-	-	-	·근린공원 중복결정 (124m²)
	중로	소계	-	10	2,693	49,584.5	26,085.6	6,376.0	17,122.9	-	-	·보행자도로 중복결정 (100m²)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2	15~18	4	840	13,740.6	13,740.6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소계	-	11	894	7,447.9	4,253.6	-	3,194.3	-	-	
		1	11.3~11.5	2	61	724.3	347.3	-	377.0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3	6	5	180	1,113.9	708.9	-	405.0	-	-	
보행자 적용 도로	소 계		-	6	128	964.4	844.4	-	120.0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포함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일반도로 중복결정 (100m²)
		2	8	1	20	160.0	160.0	-	-	-	-	
	소로	3	6	4	82	492.8	372.8	-	120.0	-	-	

-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일반도로	합 계		-	30	5,622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포함 ·훼손지 복구 ·용지내 포함 ·철도 중복결정 (626m²) ·근린공원 중복결정 (124m²) ·보행자도로 중복결정 (100m²)
	소 계		-	24	5,494	123,399.2	37,324.0	55,453.0	30,562.2	60.0	-	
	대로	소계	-	3	1,907	66,362.2	6,980.2	49,077.0	10,245.0	60.0	-	
		1	37~40	1	286	10,245.0	-	-	10,245.0	-	-	
		2	31~37	1	1,382	49,137.0	-	49,077.0	-	60.0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4	26,085.5	6,376.0	17,122.9	-	-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2	15~18	4	840	13,740.5	13,740.5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소계	-	11	894	7,452.6	4,258.3	-	3,194.3	-	-	
		1	11.3~11.5	2	61	729.0	352.0	-	377.0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3	6	5	180	1,113.9	708.9	-	405.0	-	-	
	보행자 적용 도로	소 계		-	6	128	964.4	844.4	-	120.0	-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2	8	1	20	160.0	160.0	-	-	-	-	
소로		3	6	4	82	492.8	372.8	-	120.0	-	-	

2) 공 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기정	변경		
계	-	5개소	254,838.5 (146,570.5)	254,828.5 (146,560.5)	-	·지구방 푸른수목원 108,268m ² 포함
근린공원		푸른 수목원	구로구 향동 31공원 일원	200,956.0 (92,688.0)	200,956.0 (92,688.0)	2공구, 4공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m ²) ·유수지1,3중복결정 (6,911m ²) ·도로중복결정 (124m ²) ·광명 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303m ² , 국토부 고시 제2020-347호) ·2공구 : 90,124.2m ² ·4공구 : 2,563.8m ²
	2		구로구 향동 76-1전 일원	14,425.6	14,425.6	5공구
	3		구로구 향동 산50-2임 일원	12,559.4	12,549.5	1공구
	4		구로구 향동 산50-3임 일원	14,084.5	14,084.4	1공구
체육공원	1		구로구 향동 162전 일원	12,813.0	12,813.0	3공구 ·유수지2 중복결정 (2,512m ²)

3) 광 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1,375	-	
경관광장	1	구로구 향동 214-3전 일원	1,375	2공구	

4) 녹 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17개소	35,746.7	35,726.5	-	-	
완충녹지	소계	5개소	11,845.2	11,840.6	-	-	
	1	구로구 향동 산50-9철 일원	1,246.2	1,246.2	1공구	1공구	
	2	구로구 향동 산50-5임 일원	2,768.0	2,768.0	3공구	3공구	
	3	구로구 향동 216-11답 일원	3,025.0	3,025.0	3공구	3공구	
	4	구로구 향동 216-2답 일원	738.0	738.0	2공구	2공구	
	5	구로구 향동 211-23답 일원	4,068.0	4,063.4	3공구	3공구	
경관녹지	소계	8개소	15,127.1	15,110.8	-	-	
	1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1,046.0	1,046.0	3공구	3공구	
	2	구로구 향동 100-6답 일원	1,353.0	1,353.0	2공구	2공구	
	3	구로구 향동 190전 일원	1,157.0	1,157.0	3공구	3공구	
	4	구로구 향동 산44-1임 일원	3,915.5	3,915.5	1공구	1공구	
	5	구로구 향동 산48-1임 일원	2,954.6	2,954.6	3공구	3공구	
	6	구로구 향동 산50-1임 일원	3,567.0	3,549.7	3공구	1공구	
	7	구로구 향동 193-2답 일원	700.4	701.4	1공구	1공구	
	8	구로구 향동 145-7대 일원	433.6	433.6	1공구	1공구	
연결녹지	소계	4개소	8,774.4	8,775.1	-	-	
	1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5,641.2	5,641.2	1공구	1공구	
	2	구로구 향동 158-1전 일원	1,196.6	1,196.6	1공구	1공구	
	3	구로구 향동 산50-1임 일원	1,136.6	1,137.3	1공구	1공구	
	4	구로구 향동 216-13답 일원	800.0	800.0	3공구	3공구	

5) 공공공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기정	변경		
계	-	15개소	12,144.4	12,143.4	-	
공공공지	1	구로구 향동 31-1도 일원	1,333.4	1,333.4	1공구	
	2	구로구 향동 118-2대 일원	2,355.0	2,355.0	2공구	
	3	구로구 향동 110-2철 일원	1,497.0	1,497.0	2공구	
	4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539.0	539.0	3공구	
	5	구로구 향동 100-6답 일원	1,220	1,220	2공구	
	6	구로구 향동 111-3답 일원	314.0	314.0	2공구	· 훼손지 복구용지내
	7	구로구 향동 200-1답 일원	471.0	471.0	2공구	· 훼손지 복구용지내
	8	구로구 향동 199-4수 일원	327.0	327.0	2공구	· 훼손지 복구용지내
	9	구로구 향동 183-1답 일원	1,112.1	1,112.1	1공구	
	10	구로구 향동 190전 일원	481.0	481.0	3공구	
	11	구로구 향동 162전 일원	921.0	921.0	3공구	
	12	구로구 향동 193-2답 일원	602.5	602.5	1공구	
	13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430.2	430.2	1공구	
	14	구로구 향동 215답 일원	496.0	495.0	1공구	
	15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45.2	45.2	1공구	

6) 하 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22,859	-	
하천	1	구로구 향동222-41구 일원	22,859	2공구	도로 및 철도시설과 중복결정(2,336m ²) 포함 면적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하수도 중복결정

7)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3개소	9,423	-	용량 : 약19,030m ³
저류시설	1	구로구 향동 111-3답 일원	2,836	2공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m ²)
	2	구로구 향동 164전 일원	2,512	3공구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m ²)
	3	구로구 향동 198-2답 일원	4,075	2공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m ²)

8)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13,447	-	
폐기물처리시설	1	구로구 향동 58-1답 일원	13,447	2공구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13,447m ²)

9) 철도(군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1개소	9,124	-	
철도(군사시설)	1	구로구 향동 110-2철 일원	9,124	2공구	·존치시설 (국가철도공단 관리)

10)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 구	비 고
계	-	2개소	20,546.4	-	
초등학교	2	구로구 향동 160전 일원	9,994.3	1공구	
중학교	3	구로구 향동 100답 일원	10,552.1	1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m ²)	비 고
계	341	160,949.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62	54,874	
하천	1	258	
구거	51	25,617	
제방	11	423	
철도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이용상태

-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 2) 도 로 : 도로, 구거
-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 4)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 5)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 6) 대 지 : 대지
- 7) 제 방 : 제방, 도로
- 8) 임 야 : 임야
- 9) 유 지 : 유지
- 10) 수도용지 : 도로, 수도용지
- 11) 철도 :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725.0	103,643.6	187,210.2	64,821.8	2,623.8	14,425.6	
도 로	124,359.0	38,163.8	55,453.0	30,682.2	60.0	-	- 30개 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 중복결정) ※ 철도 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70.5	26,64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 도로:124㎡ 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 중복결정)
녹 지	35,746.7	14,270.1	2,091.0	19,385.6	-	-	- 17개소
공공공지	12,144.4	4,019.4	6,184.0	1,941.0	-	-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 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 (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698.4	107,188.6	187,210.2	61,250.2	2,623.8	14,425.6	
도 로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 30개 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 중복결정) ※ 철도 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60.5	26,63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 도로:124㎡ 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 중복결정)
녹 지	35,726.5	17,821.5	2,091.0	15,814.0	-	-	- 17개소
공공공지	12,143.4	4,018.4	6,184.0	1,941.0	-	-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 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 (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6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근 린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체 육 공 원 : 지역주민의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및 광 장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 결 녹 지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광 장 : 주민의 휴식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치
- 공 공 공 지 : 역곡천의 수변경관의 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을 확보

4) 하천 및 저류지 : 역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